

속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36
----------	-----

제출년월일 : 1994. 4.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 제안사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시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하며
- 현행 속초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의 오수관련사항과 속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통합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하여 적정을 기하도록 지도단속하여 맑은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화조를 청소한자로 하여금 그 소유주가 관리기준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 하였거나 부적정하게 청소 하였는지의 여부를 신고토록 함(안 제3조)
- 요금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수거 의뢰인에게 그 수거량을 확인시킨 후 수수료를 징수토록 함(안 제5조)
- 분뇨관련영업 허가 : 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로 제한(안 제10조)
- 정화조등 관련 의무 불이행을 제재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수수료를 일부 조정 하고자 함(안 제4조)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 1 당 12원(수거요금 10, 종말처리비 2원)

정화조 및 오수,축산폐수정화시설 청소요금 : 1 당 15원(수거요금 10, 청소요금 2, 종말처리비 2원)

□ 칙 부

- 시정조정위원회 부의결과 1부.
-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1부.

속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 ① 시장은 법 제9조 법 제10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기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시기도래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시설의 내부를 청소하도록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정화조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 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크임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내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2. 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크임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 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3조(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정화조청소업자는 정화조등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화조등이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의 여부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처리) ①시장은 관할지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수수료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조례 제7조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시장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률수별, 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주민의 분뇨 수집 민원 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③요금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분뇨의 수거 및 정화조 청소시 분뇨관련영업자는 반드시 수거의뢰자에게 그 수거량을 확인시킨후 수수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처리 수수료 징수등)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또는 정화조 등의 오니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위생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제12조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자
2.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장을 이용할때마다 물량반입 신고를 하고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등을 반입할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의 처리장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등의 반입시 처리장의 관계직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⑤처리장 이용자가 처리장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부락으로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분뇨량등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분뇨관련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하였을 때에는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①시장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축산업자로 부터 축산폐수의 량, 성상, 오염물질의 농도 기타배출방법 및 형태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정화조 및 오수 축산폐수 정화시설 청소요액표의 기준에 준하여 처리비용을 징수할수 있다.

제10조(분뇨관련영업 허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11조(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35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도모,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
2.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분뇨 관련 영업에 수반하는 업무

제12조(처리실적 보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은자는 그 처리 실적을 분기 1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등) ①시장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 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위탁) 시장은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를 따라 수수료, 수집, 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 징수한다.

제16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의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과태료부과 금액은 최고 100만원 까지로 하며 항목별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강제징수)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제22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 시세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

[별표 1]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요약표

(단위 : 원)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 수 료			비고
		계	수거요금	종말처리비	
분뇨	1 당	12	10	2	

[별표 2]

정화조 및 오수, 축산폐수정화시설 청소 요약표

(단위 : 원)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 수 료				비고
		계	수거요금	청소요금	종말처리비	
정화조 및 오수·축산 폐수정화 시설	1 당	15	10	3	2	

[별표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1.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 시설(신고대상)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5조)			
가. 오수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100㎥미만인 오수정화 시설			
(가) 방류수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나) 방류수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다) 방류수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600	700
(라) 방류수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	700	800	1,000
(2) 1일 처리용량이 100㎥이상인 오수정화 시설			
(가) 방류수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200	300	400
(나) 방류수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400	500	600
(다) 방류수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600	700	800
(라) 방류수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	800	900	1,000
나. 정화조			
(1) 처리용량 10㎥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2) 처리용량 10㎥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300	400	5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다.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1) 방류수수질기준 20%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2) 방류수수질기준 20%이상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3) 방류수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600	700
(4) 방류수수질기준 100%이상을 초과한 경우	700	800	1,000
2.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			
가.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200	500	1,000
나. 정화조의 경우	100	200	500
3.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 자 (법 제11조 또는 제26조)			
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경우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200	200	200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0	300	3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500	500	500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000	1,000	1,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4. 오수정화시설·정화조·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 (법제13조1항 및 3항, 제22조 또는 제27조)			
가.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나.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000	1,000	1,000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자(법 제 14조 제2항 또는 제28조 제2항)			
가. 방류수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 200㎥이상 정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 2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반기별 1회 이상	100	200	500
(2)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은 분기별 1회 이상	300	500	1,000
(3) 1일 처리용량 5㎥이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은 연 1회 이상	100	200	500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이 10㎥미만인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100	300	5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2) 처리용량 10㎥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	300	500	8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500	700	1,000
다.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라.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대상)	500	1,000	1,000
6.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1항)	500	700	1,000
7.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4항)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500	700	1,000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300	500	800
8. 영업구역·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영업자(법 제35조 제4항)			
가.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	500	700	1,000
나.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100	300	500
9.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분뇨관련영업자(법 제35조 제6항)	300	500	1,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10.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 제2항)	300	500	1,000
11.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 제3항)	300	500	1,000
12.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500	700	1,000
13.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	300	500	1,000
14.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 영업자,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 (법 제45조)	300	500	1,000
15.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46조 제1항)	300	500	1,00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하나의 부과대상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만을 적용한다.
3.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4.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5. 방류수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숫점이하 첫째자리 까지로 한다.
6.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하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은 법 제24조 제4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위생환경사업소 사용권 일금 : 원 직 인 숙 초 시 장	제 호 위생환경사업소 사용권 일금 : 원 직 인 숙 초 시 장
--	--

1. 용지규격은 192절지로 한다.
2. 100원권, 500원권, 1,000원권으로 구분 발행한다.
3. 1권을 100매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 부.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번기 제3호 서지)

(개인봉기용)

제 호 제대원남부봉기서		
이번시합 :		
제	주	계
남부	성	명
이	주	수
부	이	부
기	지	지
제대원규예		

이의 제대원은 의하여 불
제 주의 규정예 의하여 불
제기이니 년 에 남부하시기 미
리니

년 월 일

수남원부인

수 초 시 정

(수남은형 보편용)

제 호 제대원남부시		
이번시합 :		
제	주	계
남부	성	명
이	주	수
부	이	부
기	지	지
제대원규예		

위의 규예를 남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남원부인

(시, 군 봉보용)

제 호 영수원봉기서		
이번시합 :		
제	주	계
남부	성	명
이	주	수
부	이	부
기	지	지
제대원규예		

이의 규예를 영수하시기에
봉기하시니.

년 월 일

수 초 시 정

(개인봉기용)

제 호 영 수 중		
이번시합 :		
제	주	계
남부	성	명
이	주	수
부	이	부
기	지	지
제대원규예		

이의 규예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남원부인

취급가인

※ 제대원 지분에 이의가 있을시는 고지를 발은남보부터 30일이내에 권하하시에 미리 시정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기 미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속 장				
납 부 의 무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주 소 : 성 명 : 귀 하			
① 고 지 금 액	② 취 소 (변경) 액	③ 차 액	비 고
취 소 (변경) 사유 :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l)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납부의무자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관	⑤ 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일자	⑦ 과태료액	
	⑧ 과태료 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 초 시 장 귀 하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수 신 조 서 장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② 조 소	(한자) 	③ 주민등록 번호
과태료 처분지역	④ 고지일자 ⑤ 부과기간	⑥ 과태료금액 ⑦ 이의제기 일 자	
첨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10mm × 297mm

(범지 개조서)

[illegible]210mm × 297mm (41 g/54g/m²)